제323회 남양주시의회(제1차 정례회)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
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2026. 10. 30.

기획행정위원회

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

1. 제안경과

○ 본 동의안은 2026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

2. 제안이유

○「지방세기본법」제152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남양주시 의회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

3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○ 「지방세기본법」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

○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)

4. 주요내용

○ 출연금액 : 49,224천원

- 산출근거 : 전전년도('25년) 보통세[1]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.0
- 산출내역 : 492,236,363천원 x (1.0 / 10,000) = 49,224천원

○ 사 업 명 :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

○ 사업목적 :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*)의 지방세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

* 한국지방세연구원

-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2011년 설립
- 자치단체 요청 연구과제 수행, 시가표준액 조사 및 연구, 지방세 전문교육, 불복 사건 자문 등 소송사무 지원, 지방세 법령정보 DB 구축

○ 출연기관 : 한국지방세연구원

---

1) 주민세, 지방소득세, 재산세, 자동차세, 담배소비세, 지방소비세, 지난년도수입(시세)

○ 출연현황 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출연금	47,469	50,579	57,364	64,938	59,032	48,115
비 율	1.3 / 10,000	1.2 / 10,000	1.2 / 10,000	1.2 / 10,000	1.2 / 10,000	1.0 / 10,000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관련부서 : 세정과

6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 지방세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4,922만 4천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임.

○ 출연금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,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 출연이라는 점에서 출연의 필요성과 금액 산정의 적정성이 인정됨.

○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연구와 세무공무원 전문교육, 지방세 불복·소송 관련 자문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, 본 출연은 지방세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 아울러 연구성과와 교육·자문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시 세정업무 개선에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붙임1 관계법령

☑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☑ 지방세기본법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 <개정 2019. 12. 31., 2020. 9. 8., 2026. 2. 5.>

1. 1만분의 1.0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

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